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서 류 양 식



세 종 대 학 교

입학안내

☎ 02-3408-3456, 4455

제출서류 목록표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		
비상연락처1		비상연락처2	
지원 자격구분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번호	지원자격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1	국외근무자의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조회 동의서	※ 재학한 국외 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제외) ※ 초·중학교 작성 필요 없음
2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되어있어야 함
3		중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포함)
4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국외학교 학사일정(School Calendar)	※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 명기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사일정표
6	국외근무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학생 기준)	
7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8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모두)	
9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10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국외거주사실 증명 서류(부, 모, 학생 모두)	
11		국외근무 증빙서류(부 또는 모)	
12	전 교육과정 이수자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학생)	
14		여권 사본(학생)	
15		외국국적 증명서(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학생) [해당자만 제출]	
16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1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국적취득 사실증명서(학생) [해당자만 제출]	
18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9		고교졸업학력인정서(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0	기타	학교에서 발급받은 사유서(또는 학교장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서류제출 관련 특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	
21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만 제출]	
22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서류 목록표(본 양식)와 함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 **국외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
- ※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For verification of educational record)

수험번호	_____
이름	_____
모집단위	_____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Korea
 Tel: +82-2-3408-3456 Fax: +82-2-3408-3556 E-mail: ipsi@sejong.ac.kr <http://www.sejong.ac.kr>

School Name	_____
School Postal Code(Zip Code)	_____
School Address	_____
School Phone Number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국외학교에 등록된 본인이름)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_____, who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ejong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deeply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 For your reference, please se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Jae Woo Park

Vice President, Office of Admission _____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ejong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4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Sejong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ejo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국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Name and Signature(서명필수)		Additional comments	
Date		Signature and Title	

일자표기 Ex) 05 - 02 - 2023
 Month - Day - Year

※ 노란색 배경부분만 지원자가 기록, 서명 필수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청서를 작성 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 및 공적서류(학교장, 교육부 발급 등)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인정 요청 사유 등을 토대로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지원 구분	()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자격 미충족사유	() 지원자의 재학기간 () 지원자의 체류기간 () 기타 (내용 : _____)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 국외근무자의 체류기간	

지원자격 인정 희망기간		소명 서류명	발급처	지원자격 요청 사유 ※최대한 자세히 작성 (소재 국가명 등)
일자	해당 학년/학기			

위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신청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서명 또는 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1. 회색란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부,모,학생 각각 1부 발급 (해외근무자의 자녀) / 학생 1부 발급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2. 발급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Table with 5 columns: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Table with 3 columns: 발급대상자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연락처 (Phone No.)

Table with 2 columns: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Table with 2 column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포함 []미포함

Table with 2 columns: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Includes fields for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Previous Name, Previous Address, Previous Status of Sojourn.

Table with 2 columns: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조회한 날짜와 동일하게 기재. 즉 학력요건 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 입시

Table with 3 columns: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세종대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연락처 (Phone No.) 02-3408-3456,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자격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Table with 3 columns: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Where a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목록표(목록표 내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와 함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
 -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를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나.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단, 국외의 발급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 / 근무 / 거주 중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
 - 2)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모든 증명서상에는 **해당기간(입학·졸업일, 전입·전출일, 입사일·퇴사일·근무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 ※ 재학증명서에는 전입(입학), 전출(졸업)의 연/월/일이 학기별로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 성적증명서에 졸업 또는 재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가 졸업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라.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 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을 발급받아 제출
 - 2)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을 발급받아 제출
 - 3) 문의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메뉴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 마.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함
- 바.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사. 부·모의 근무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자는 지역·종교·전쟁 등의 특성상 제3국 수학이 불가피하였음을 나타내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 1부를 첨부해야 함
- 아.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경우 최종합격 후 고교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종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
 -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자.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자 및 지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차.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카.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